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3.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18일
- 나. 제출자 : 고기판 의원 외 5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1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2. 2.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판 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영등포구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사용료 감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되,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체별 이용횟수를 년 1회로 제한함 (안 별표 4(제8조제3항 관련))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대림운동장 사용료 감면기준을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함
(안 별표 3(제8조제2항 관련))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중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2항 별표4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에서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조정
하였고,
 - 안 제8조제2항 별표3 대림운동장 사용료에서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
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별표4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범위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으로,
- 21세기 여가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4 |
|----------|-----|

발의연월일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영등포구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사용료 감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되,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체별 이용횟수를 년 1회로 제한함(안 별표 4(제8조제3항 관련))
-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대림운동장 사용료 감면기준을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별표 3(제8조제2

항 관련))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하는 데”를 “운영에”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체육시설”이라 함은”을 ““체육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을 ““시설의 사용”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을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용사용”이라 함은”을 ““전용사용”이란”으로, “전용”을 “전적으로 사용할 때”로 한다.

제3조의2 중 “구청장 또는”을 “구청장이나”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를 “받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기타”를 “각 호의 순위에 의하고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시간 내”를 “사용시간 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은”을 “계산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설치한”을 “설치하였을”로, “완료한”을 “완료하였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행사 또는”을 “행사나”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용하는 자”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을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제9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으로, “장애인을 동반하는”을 “장애인과 함께 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9조제2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반환하여야”를 “반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를 “해당월을 제외한 나머지월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불가능한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에 해당된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를 “일시적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를 원상복구하거나”를 “원상복구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수거비용”으로, “등 필요한”을 “등의”로 한다.

제14조 중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체육활동의”를 “체육시설 사용자의 체육활동”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 및 관리를 위해”를 “운영 및 관리에”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3 비고란의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

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__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년 1회로 한정한다)

별표 4 비고란의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년 1회로 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u>을 설치 및 <u>운영하는 데</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u>“체육시설”이라 함은</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p> <p>2. <u>“시설의 사용”이라 함은</u>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u>“사용자”라 함은</u> 사용자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p> | <p>제1조(목적)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 ----- 운영에 ----- ----- 규정하여 ----- ----- -----.</p> <p>제2조(정의) ----- ----- 각 호 ----- -----.</p> <p>1. <u>“체육시설”이란</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 ----- ----- -----.</p> <p>2. <u>“시설의 사용”이란</u> ----- ----- -----.</p> <p>3. <u>“사용자”란</u> 사용자허가를 받은 자나 ----- -----.</p> |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4. “사용료”란 -----

-----.

5. “전용사용”이란 -----
----- 전적-----
----- “전용사용료”
란 전적으로 사용할 때 -----
-----.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이나 -----

-----.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는 -----

-----.
----- 대해서-----
-----.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p>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결합될 때는 다음 <u>각호의 순위에</u> 의하되 기타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p> <p>1. ~ 4. (생략)</p> |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u>각 호의 순위에</u> <u>의하고 그 밖의</u> ----- -----.</p> <p>1. ~ 4. (현행과 같음)</p> |
| <p>제6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u>각호와</u> 같다. 다만, <u>사용시간 내</u>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6조(사용시간) ①----- ----- <u>각 호</u>-----. ----- <u>사용시간 안에</u> ----- ----- -----.</p> |
| <p>1.·2. (생략)</p> <p>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u>산정</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생략)</p> <p>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u>설치한</u>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u>철거를 완료</u>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u>행사 또는 경기 없이</u>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p> | <p>1.·2. (현행과 같음)</p> <p>②----- ----- <u>계산은</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설치하였을</u> ----- ----- <u>완료하였을</u> -----. ----- <u>행사나</u> ----- -----</p> |

| | |
|---|--|
| | -----. |
| <p>제7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p> | <p>제7조(시설의 개방) ----- ----- <u>없으면</u> ----- ----- ----- ----- . ----- ----- ----- ----- -----.</p> |
| <p>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삭 제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을 <u>이용하는 자</u>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u>범위</u>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삭 제 ② ----- <u>이용하는 사람</u>----- ----- <u>범위</u>----- ----- ----- ----- -----.</p> |
| <p>③ ~ ⑤ (생략)</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 때에는</u>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②구청장은 다음 <u>각호의 자</u>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u>범위</u>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p> |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 <u>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 1. ~ 6. (현행과 같음)</p> <p>③ ----- <u>각 호의 사람</u>----- <u>에 대하여</u> ----- ----- <u>범위</u>----- ----- . -----</p>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4.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대립운동장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2. (생략)

④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장애인과 함께 오는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노인복지법」-----

③ ----- 해당하는 경우에는 ----- 범위-----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각 호----- 반환하여야 -----.

1.·2. (생략)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중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1.·2. (현행과 같음)

3. -----

-- 해당월을 제외한 나머지월을 -----

4. -----
--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1. -----
사용한 경우

2. ----- 위반한 경우

3. -----
--- 아니한 경우

② -----

----- 일시적으로 -----.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생략)

④구청장은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한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 관리로 사용자

----- 원상복구하거나 -----
-----.

② -----

----- 대해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수거비용 -----

----- 등의 -----
-----.

제14조(지도자 배치) -----
----- 체육시설 사용자의 체육활동 -----

-----.

제15조(시설물관리) -----
----- 운영 및 관 -----
----- 리에 -----

| | |
|--|--|
| <p>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 .</p> <p>제18조(시행규칙) ----- 시행에 ----- .</p> |
|--|--|

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 | | | 개 정 안 | | | | |
|---|---|----------------|-------------------------|----------------|--|---|----------------|-------------------------|----------------|
| [별표3] 대림운동장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small>(단위 : 원)</small> | | | | | [별표 3] 대림운동장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small>(단위 : 원)</small> | | | | |
| 구 분 | 평 일 | 공휴일 (토요일포함) | 운 영 시 간 | 비 고 | 구 분 | 평 일 | 공휴일 (토요일포함) | 운 영 시 간 | 비 고 |
| 대림운동장 축구장 | 40,000 | 52,000 | 11월 ~ 2월 07:00~18:00 | 1면 기준 (2시간) | 대림운동장 축구장 | 40,000 | 52,000 | 11월 ~ 2월 07:00~18:00 | 1면 기준 (2시간) |
| | | | 3월 ~ 10월 06:00~19:00 | | | | | 3월 ~ 10월 06:00~19:00 | |
|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 8,000 | 10,400 | 06:00~22:00 | 1면 기준 (2시간) |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 8,000 | 10,400 | 06:00~22:00 | 1면 기준 (2시간) |
| 비 고 | 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u><신 설></u> | | | | 비 고 | 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4.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년 1회로 한정한다) | | | |

| |
|--|
| <p>4. 대립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p> <p>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p> <p>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6.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
|--|

| |
|--|
| <p>5. 대립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p> <p>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p> <p>6.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
|--|

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p>[별표4]</p> <p>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 | | | <p>[별표 4]</p> <p>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 | | |
| 사용료 구분 | 대 상 | 대관료 | 비 고 | 사용료 구분 | 대 상 | 대관료 | 비 고 |
| 체육관 | 체육경기 | 15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체육관 | 체육경기 | 15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 | 기 타 | 300,000 | | | 기 타 | 300,000 | |
| 수영장 | 체육경기 | 280,000 |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수영장 | 체육경기 | 280,000 |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 | 기 타 | 560,000 | | | 기 타 | 560,000 | |
| 비 고 | <p>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p> <p>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p> <p>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p> <p>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3.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p>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p> <p>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u>100분의 50</u>을 감면한다.</p> <p>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 | | 비 고 | <p>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p> <p>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p> <p>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p> <p>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3.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p>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p> <p>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u>100분의 80</u>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p> <p>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 | |